

지 방 교 부 세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기 관 명 (부 서 명)	행정안전부 (교 부 세 과)
연 월 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특별재난지역 수요를 신설하고 지역 일자리 수요를 보강하여 정책적 부분을 지원하며 외국인 수요를 강화하여 사회변화를 반영하고자 함.

또한, 낙후지역 수요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인구감소지역 수요를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재정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보정수요의 고유 성격에 따라 분류체계를 변경하여 수요에 대한 직관적·합리적 이해를 도모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세출·세입 자체노력 항목을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일자리 및 지역균형뉴딜 관련 수요 강화·신설, 특별재난지역 지원을 위한 수요 신설, 외국인 수요 강화, 인구감소지역 수요 신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지원 수요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자체노력 항목 정비(별표4, 별표6)

- 1) 별표4, 외국인 수요 및 낙후지역 수요 강화, 지역균형뉴딜 수요, 재해 복구 대응 수요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지원 수요 신설
- 2) 별표6, 세출효율화 항목 중 민간위탁금 절감 노력 항목 폐지, 예산 절감노력 항목에서 국가로부터 교부된 재원에 대한 이월 예외 범위 확대, 세입확충 항목에서 담배소비세 체납 페널티 제외

나. 보정수요의 직관성·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초수요 측정항목별로 구

분되어있는 체계를 유형별 분류로 개편(별표4)

- 1) 별표4, 기존 보정수요들을 지역관리, 지역균형, 사회복지, 시책·기타 4개 유형으로 분류체계 개편

다. 기타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시행규칙 별표1, 별표2)

- 1) 별표1, 측정항목·측정단위별 단위비용 변경
- 2) 별표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정식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11.8. ~ 12.20.), 특기사항 없음

부령 제 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별표 1]

현행					개정안	
측정항목 · 측정단위별 단위비용(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표시단위	지방자치단체	단위비용(단위 : 원)	지방자치단체	단위비용(단위 : 원)
1. 일반 행정 비	가. 인건비	공무원 수	명	특별시	특별시	63,181,550
				광역시	광역시	63,181,550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63,181,550
				도	도	55,640,470
				시	시	63,950,340
				군	군	64,007,280
	나. 일반관리비	공무원 수	명	특별시	특별시	19,144,900
				광역시	광역시	19,144,900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19,144,900
				도	도	16,180,080
	다. 안전관리비	인구 수	명	시	시	27,940,290
				군	군	25,588,630
				특별시	특별시	21,270
				광역시	광역시	21,270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21,270
				도	도	18,950
				시	시	31,000
				군	군	143,260

현행						개정안	
2. 문 화 환 경 비	가. 문화관광비	인구 수	명	특별시	<u>84,670</u>	특별시	<u>84,670</u>
				광역시	<u>84,670</u>	광역시	<u>84,670</u>
				특별자치시	<u>84,670</u>	특별자치시	<u>84,670</u>
				도	<u>28,930</u>	도	<u>28,930</u>
	나. 환경보호비	인구 수	명	시	<u>96,520</u>	시	<u>96,520</u>
				군	<u>267,540</u>	군	<u>267,540</u>
				특별시	<u>91,450</u>	특별시	<u>91,450</u>
				광역시	<u>91,450</u>	광역시	<u>91,450</u>
	가.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명	특별자치시	<u>91,450</u>	특별자치시	<u>91,450</u>
				도	<u>12,650</u>	도	<u>12,650</u>
				시	<u>126,960</u>	시	<u>126,960</u>
				군	<u>327,410</u>	군	<u>327,410</u>
3. 사 회 복 지 비	가.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명	특별시	<u>593,060</u>	특별시	<u>593,060</u>
				광역시	<u>593,060</u>	광역시	<u>593,060</u>
				특별자치시	<u>593,060</u>	특별자치시	<u>593,060</u>
				도	<u>271,200</u>	도	<u>271,200</u>
	나. 노인복지비	노령인구 수	명	시	<u>296,850</u>	시	<u>296,850</u>
				군	<u>419,800</u>	군	<u>419,800</u>
				특별시	<u>1,055,360</u>	특별시	<u>1,055,360</u>
				광역시	<u>1,055,360</u>	광역시	<u>1,055,360</u>
	가.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명	특별자치시	<u>1,055,360</u>	특별자치시	<u>1,055,360</u>
				도	<u>153,160</u>	도	<u>153,160</u>
				시	<u>842,890</u>	시	<u>842,890</u>
				군	<u>939,840</u>	군	<u>939,840</u>

현행						개정안	
	다. 아동복지비	아동 수	명	특별시	<u>1,326,230</u>	특별시	<u>1,326,230</u>
				광역시	<u>1,326,230</u>	광역시	<u>1,326,230</u>
				특별자치시	<u>1,326,230</u>	특별자치시	<u>1,326,230</u>
				도	<u>274,210</u>	도	<u>274,210</u>
				시	<u>1,036,030</u>	시	<u>1,036,030</u>
				군	<u>1,633,400</u>	군	<u>1,633,400</u>
	라. 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 수	명	특별시	<u>1,478,400</u>	특별시	<u>1,478,400</u>
				광역시	<u>1,478,400</u>	광역시	<u>1,478,400</u>
				특별자치시	<u>1,478,400</u>	특별자치시	<u>1,478,400</u>
				도	<u>196,530</u>	도	<u>196,530</u>
				시	<u>964,260</u>	시	<u>964,260</u>
				군	<u>965,510</u>	군	<u>965,510</u>
	마. 보건사회복지비	인구 수	명	특별시	<u>99,800</u>	특별시	<u>99,800</u>
				광역시	<u>99,800</u>	광역시	<u>99,800</u>
				특별자치시	<u>99,800</u>	특별자치시	<u>99,800</u>
				도	<u>33,740</u>	도	<u>33,740</u>
				시	<u>91,800</u>	시	<u>91,800</u>
				군	<u>224,110</u>	군	<u>224,110</u>
	가. 농업비	경지 면적	천제곱미터	특별시	<u>256,650</u>	특별시	<u>256,650</u>
				광역시	<u>256,650</u>	광역시	<u>256,650</u>
				특별자치시	<u>256,650</u>	특별자치시	<u>256,650</u>
				도	<u>62,210</u>	도	<u>62,210</u>
				시	<u>282,650</u>	시	<u>282,650</u>
				군	<u>279,430</u>	군	<u>279,430</u>

현행						개정안	
4. 지 역 경 제 비	나. 임수산비	산림·어장·갯벌 면적	천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u>56,380</u> <u>56,380</u> <u>56,380</u> <u>70,480</u> <u>34,940</u> <u>31,630</u>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u>56,380</u> <u>56,380</u> <u>56,380</u> <u>70,480</u> <u>34,940</u> <u>31,630</u>
	다. 산업경제비	사업체 종사자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u>157,760</u> <u>157,760</u> <u>157,760</u> <u>81,660</u> <u>128,140</u> <u>285,670</u>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u>157,760</u> <u>157,760</u> <u>157,760</u> <u>81,660</u> <u>128,140</u> <u>285,670</u>
	라. 도로관리비	도로 면적	천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u>5,218,090</u> <u>5,218,090</u> <u>5,218,090</u> <u>6,426,850</u> <u>7,466,540</u> <u>9,388,340</u>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u>5,218,090</u> <u>5,218,090</u> <u>5,218,090</u> <u>6,426,850</u> <u>7,466,540</u> <u>9,388,340</u>
	마. 교통관리비	자동차 대수	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u>123,320</u> <u>123,320</u> <u>123,320</u> <u>26,210</u> <u>162,070</u> <u>205,780</u>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u>123,320</u> <u>123,320</u> <u>123,320</u> <u>26,210</u> <u>162,070</u> <u>205,780</u>

현행						개정안	
	바. 지역관리비	행정구역 면적	천제곱미터	특별시	<u>257,390</u>	특별시	<u>257,390</u>
				광역시	<u>257,390</u>	광역시	<u>257,390</u>
				특별자치시	<u>257,390</u>	특별자치시	<u>257,390</u>
				도	<u>5,980</u>	도	<u>5,980</u>
				시	<u>78,360</u>	시	<u>78,360</u>
				군	<u>32,680</u>	군	<u>32,680</u>
※ 단위비용 산정방식 : <u>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합</u>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수치의 합							

[별표 2]

현행				개정안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제2항 관련)						
경비의 종류	산정방식		비고(ω)	산정방식		비고(ω)
1. 인건비	시·도 시·군 · 구	$Y_i = \text{기준인건비} \times$ $\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일반회계 인건비 일반재원}}{\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인건비(일반회계+ 특별회계)}}$ $\times \omega$ ※ 특별회계에 있는 소방인건비는 일반회계로 간주하되,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되는 소방인건비는 제외한다.	<u>특별시(0.7647)</u> <u>광역시(0.7559)</u> <u>특별자치시(0.7598)</u> <u>도(0.7540)</u> <u>시(0.7539)</u> <u>군(0.7429)</u> <u>구(0.7789)</u>	시·도 시·군 · 구	$Y_i = \text{기준인건비} \times$ $\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일반회계 인건비 일반재원}}{\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인건비(일반회계+ 특별회계)}}$ $\times \omega$ ※ 특별회계에 있는 소방인건비는 일반회계로 간주하되,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되는 소방인건비는 제외한다.	<u>특별시(0.7647)</u> <u>광역시(0.7559)</u> <u>특별자치시(0.7598)</u> <u>도(0.7540)</u> <u>시(0.7539)</u> <u>군(0.7429)</u> <u>구(0.7789)</u>
2. 일반관리비	시·도	<u>$Y_i = [-7985.01165 + 38.90157(\text{Ge} + \text{La})] \times \omega$</u>	<u>특별시(0.5856)</u> <u>광역시(0.4213)</u>	시·도	<u>$Y_i = [-7985.01165 + 38.90157(\text{Ge} + \text{La})] \times \omega$</u>	<u>특별시(0.5856)</u> <u>광역시(0.4213)</u>
	시·군 · 구	<u>$Y_i = [-7985.01165 + 38.90157(\text{Ge} + \text{La})] \times \omega$</u>	<u>특별자치시(0.5773)</u> <u>도(0.4243)</u> <u>시(0.8214)</u> <u>군(0.9149)</u> <u>구(0.7215)</u>	시·군 · 구	<u>$Y_i = [-7985.01165 + 38.90157(\text{Ge} + \text{La})] \times \omega$</u>	<u>특별자치시(0.5773)</u> <u>도(0.4243)</u> <u>시(0.8214)</u> <u>군(0.9149)</u> <u>구(0.7215)</u>
	※ Ge: 기준인건비 공무원 수, La: 지방의원 수			※ Ge: 기준인건비 공무원 수, La: 지방의원 수		

현행				개정안			
3. 안전관리비	시·도	$\ln Y_i = [-2.12668 + 0.64427 \ln P + 0.60301 \ln(Df + Fs)] \times \omega$	<u>특별시(0.4387)</u> <u>광역시(0.5316)</u> <u>특별자치시(1.2538)</u> <u>도(0.7131)</u> <u>시(0.8275)</u> <u>군(0.7463)</u> <u>구(0.4846)</u>	시·도	$\ln Y_i = [-2.12668 + 0.64427 \ln P + 0.60301 \ln(Df + Fs)] \times \omega$	<u>특별시(0.4387)</u> <u>광역시(0.5316)</u> <u>특별자치시(1.2538)</u> <u>도(0.7131)</u> <u>시(0.8275)</u> <u>군(0.7463)</u> <u>구(0.4846)</u>	
	특별자치시	$\ln Y_i = [-2.12668 + 0.64427 \ln P + 0.60301 \ln(Df + Fs)] \times \omega + 0.02656 Sr$		특별자치시	$\ln Y_i = [-2.12668 + 0.64427 \ln P + 0.60301 \ln(Df + Fs)] \times \omega + 0.02656 Sr$		
	시·군·구	$Y_i = [(1104.34644 + 0.01474P + 0.00806A + 0.01142Sr)] \times \omega$		시·군·구	$Y_i = [(1104.34644 + 0.01474P + 0.00806A + 0.01142Sr)] \times \omega$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Df: 재난관리대상시설 수, Fs: 소방관서 수, Sr: 소화전 길이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Df: 재난관리대상시설 수, Fs: 소방관서 수, Sr: 소화전 길이			
4. 문화관광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Y_i = (24471 + 0.03793P + 0.00178A) \times \omega$	<u>특별시(0.6576)</u> <u>광역시(0.9224)</u> <u>특별자치시(0.7490)</u> <u>도(0.6661)</u> <u>시(0.7929)</u> <u>군(0.5939)</u> <u>구(0.6567)</u>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Y_i = (24471 + 0.03793P + 0.00178A) \times \omega$	<u>특별시(0.6576)</u> <u>광역시(0.9224)</u> <u>특별자치시(0.7490)</u> <u>도(0.6661)</u> <u>시(0.7929)</u> <u>군(0.5939)</u> <u>구(0.6567)</u>	
	도	$Y_i = (27657 + 0.01491P + 0.00623A) \times \omega$		도	$Y_i = (27657 + 0.01491P + 0.00623A) \times \omega$		
	시·군·구	$\ln Y_i = (0.41812 + 0.39026 \ln P + 0.40863 \ln A) \times \omega$		시·군·구	$\ln Y_i = (0.41812 + 0.39026 \ln P + 0.40863 \ln A) \times \omega$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현행				개정안			
5. 환경보호비	시·도	$\ln Yi = (3.67417 + 0.36997\ln P + 0.17624\ln A) \times \omega$	특별시(1.5726) 광역시(0.6512)	시·도	$\ln Yi = (3.67417 + 0.36997\ln P + 0.17624\ln A) \times \omega$	특별시(1.5726) 광역시(0.6512)	특별시(1.5726) 광역시(0.6512)
	시·군·구	$\ln Yi = (1.13046 + 0.48966\ln P + 0.27066\ln A) \times \omega$	특별자치시(1.0262) 도(0.2645) 시(0.8844) 군(0.7687) 구(0.6909)	시·군·구	$\ln Yi = (1.13046 + 0.48966\ln P + 0.27066\ln A) \times \omega$	특별자치시(1.0262) 도(0.2645) 시(0.8844) 군(0.7687) 구(0.6909)	특별자치시(1.0262) 도(0.2645) 시(0.8844) 군(0.7687) 구(0.6909)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6. 기초생활보장비	시·도	$\ln Yi = (-0.84844 + 1.01173\ln BI) \times \omega$	특별시(1.1106) 광역시(0.6157)	시·도	$\ln Yi = (-0.84844 + 1.01173\ln BI) \times \omega$	특별시(1.1106) 광역시(0.6157)	특별시(1.1106) 광역시(0.6157)
	시·군·구	$Yi = (1577.58542 + 0.32958BI) \times \omega$	특별자치시(1.0302) 도(0.5453) 시(0.7613) 군(0.7183) 구(0.7966)	시·군·구	$Yi = (1577.58542 + 0.32958BI) \times \omega$	특별자치시(1.0302) 도(0.5453) 시(0.7613) 군(0.7183) 구(0.7966)	특별자치시(1.0302) 도(0.5453) 시(0.7613) 군(0.7183) 구(0.7966)
	※ BI: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수(생계+의료+주거+교육)			※ BI: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수(생계+의료+주거+교육)			
7. 노인복지비	시·도	$Yi = (51227 + 0.34118Sc) \times \omega$	특별시(0.6598) 광역시(1.0318)	시·도	$Yi = (51227 + 0.34118Sc) \times \omega$	특별시(0.6598) 광역시(1.0318)	특별시(0.6598) 광역시(1.0318)
	특별자치시	$Yi = (51227 + 0.34118Sc) \times \omega + 5.55196Sh$	특별자치시(0.4051)	특별자치시	$Yi = (51227 + 0.34118Sc) \times \omega + 5.55196Sh$	특별자치시(0.4051)	특별자치시(0.4051)
	시·군·구	$\ln Yi = (1.85322 + 0.74676\ln Sc + 0.13486\ln Sh) \times \omega$	도(0.3560) 시(0.9276) 군(0.7803) 구(0.6848)	시·군·구	$\ln Yi = (1.85322 + 0.74676\ln Sc + 0.13486\ln Sh) \times \omega$	도(0.3560) 시(0.9276) 군(0.7803) 구(0.6848)	도(0.3560) 시(0.9276) 군(0.7803) 구(0.6848)
	※ Sc: 노령인구 수, Sh: 경로당 수(신고)			※ Sc: 노령인구 수, Sh: 경로당 수(신고)			

현행				개정안			
8. 아동복지비	시·도	$\ln Yi = (1.26722 + 0.86648 \ln Ch) \times \omega$	특별시(1.0967) 광역시(0.7359)	시·도	$\ln Yi = (1.26722 + 0.86648 \ln Ch) \times \omega$	특별시(1.0967) 광역시(0.7359)	
	시·군·구	$\ln Yi = (2.79009 + 0.76313 \ln Ch) \times \omega$	특별자치시(1.1532) 도(0.4741) 시(0.8961) 군(0.8595) 구(0.7143)	시·군·구	$\ln Yi = (2.79009 + 0.76313 \ln Ch) \times \omega$	특별자치시(1.1532) 도(0.4741) 시(0.8961) 군(0.8595) 구(0.7143)	
	※ Ch: 아동 수			※ Ch: 아동 수			
9. 장애인 복지비	시·도	$\ln Yi = (3.8891 + 0.63154 \ln Dp) \times \omega$	특별시(1.7509) 광역시(1.0864)	시·도	$\ln Yi = (3.8891 + 0.63154 \ln Dp) \times \omega$	특별시(1.7509) 광역시(1.0864)	
	시·군·구	$Yi = (-98.15667 + 1.17347 Dp) \times \omega$	특별자치시(0.6678) 도(0.3720) 시(0.8260) 군(0.8385) 구(0.6838)	시·군·구	$Yi = (-98.15667 + 1.17347 Dp) \times \omega$	특별자치시(0.6678) 도(0.3720) 시(0.8260) 군(0.8385) 구(0.6838)	
	※ Dp: 등록장애인 수			※ Dp: 등록장애인 수			
10. 보건사회 복지비	시·도	$\ln Yi = (-1.39934 + 0.91524 \ln P) \times \omega$	특별시(1.1925)	시·도	$\ln Yi = (-1.39934 + 0.91524 \ln P) \times \omega$	특별시(1.1925)	
	특별자치시	$\ln Yi = (-1.39934 + 0.91524 \ln P) \times \omega + 0.47138 Hf$	광역시(0.6660) 특별자치시(1.0558)	특별자치시	$\ln Yi = (-1.39934 + 0.91524 \ln P) \times \omega + 0.47138 Hf$	광역시(0.6660) 특별자치시(1.0558)	
	시·군·구	$Yi = (-1014.52736 + 0.06881 P + 1.29898 Hf) \times \omega$	도(0.5048) 시(0.8455) 군(0.8195) 구(0.6491)	시·군·구	$Yi = (-1014.52736 + 0.06881 P + 1.29898 Hf) \times \omega$	도(0.5048) 시(0.8455) 군(0.8195) 구(0.6491)	
	※ P: 인구 수, Hf: 보건시설 면적			※ P: 인구 수, Hf: 보건시설 면적			

현행				개정안			
11. 농업비	시·도	$\ln Yi = (3.77241 + 0.56273 \ln Ac) \times \omega$	특별시(1.1021) 광역시(0.6531)	시·도	$\ln Yi = (3.77241 + 0.56273 \ln Ac) \times \omega$	특별시(1.1021) 광역시(0.6531)	
	시·군·구	$Yi = (1965.55434 + 0.29558 Ac) \times \omega$	특별자치시(0.8912) 도(0.8648)	시·군·구	$Yi = (1965.55434 + 0.29558 Ac) \times \omega$	특별자치시(0.8912) 도(0.8648)	
	※ Ac: 경지 면적(전+답+과)		시(0.9028) 군(0.8962) 구(0.3758)	※ Ac: 경지 면적(전+답+과)		시(0.9028) 군(0.8962) 구(0.3758)	
12. 임수산비	시·도	$Yi = [18805 + 0.18934 Fo + 0.01845(Fg+Mf)] \times \omega$	특별시(0.0000) 광역시(0.5380)	시·도	$Yi = [18805 + 0.18934 Fo + 0.01845(Fg+Mf)] \times \omega$	특별시(0.0000) 광역시(0.5380)	
	시·군·구	$Yi = [2504.29707 + 0.02516 Fo + 0.04323(Fg+Mf)] \times \omega$	특별자치시(0.0740) 도(0.8387)	시·군·구	$Yi = [2504.29707 + 0.02516 Fo + 0.04323(Fg+Mf)] \times \omega$	특별자치시(0.0740) 도(0.8387)	
	※ Fo: 산림 면적, Fg: 어장 면적, Mf: 갯벌 면적		시(0.9841) 군(0.9172) 구(0.3402)	※ Fo: 산림 면적, Fg: 어장 면적, Mf: 갯벌 면적		시(0.9841) 군(0.9172) 구(0.3402)	
13. 산업경제비	시·도	$\ln Yi = (4.29432 + 0.40263 \ln Ce) \times \omega$	특별시(5.8527) 광역시(6.8922)	시·도	$\ln Yi = (4.29432 + 0.40263 \ln Ce) \times \omega$	특별시(5.8527) 광역시(6.8922)	
	시·군·구	$Yi = (6526.7037 + 0.03324 Ce) \times \omega$	특별자치시(3.4741) 도(5.6984)	시·군·구	$Yi = (6526.7037 + 0.03324 Ce) \times \omega$	특별자치시(3.4741) 도(5.6984)	
	※ Ce: 사업체 종사자 수		시(1.5524) 군(0.8494) 구(0.2018)	※ Ce: 사업체 종사자 수		시(1.5524) 군(0.8494) 구(0.2018)	

현행				개정안			
14. 도로관리비	시·도	$\ln Y_i = (7.06463 + 0.47181 \ln R_o) \times \omega$	<u>특별시(0.3976)</u> <u>광역시(0.6762)</u>	시·도	$\ln Y_i = (7.06463 + 0.47181 \ln R_o) \times \omega$	<u>특별시(0.3976)</u> <u>광역시(0.6762)</u>	
	시·군·구	$Y_i = (8853.9675 + 4.43651 R_o) \times \omega$	<u>특별자치시(0.9264)</u> <u>도(0.9054)</u> <u>시(1.1250)</u> <u>군(0.7775)</u> <u>구(0.5240)</u>	시·군·구	$Y_i = (8853.9675 + 4.43651 R_o) \times \omega$	<u>특별자치시(0.9264)</u> <u>도(0.9054)</u> <u>시(1.1250)</u> <u>군(0.7775)</u> <u>구(0.5240)</u>	
	※ R _o : 도로(포장+비포장+미개통) 면적			※ R _o : 도로(포장+비포장+미개통) 면적			
15. 교통관리비	시·도	$\ln Y_i = (3.37757 + 0.55741 \ln C_a) \times \omega$	<u>특별시(0.7918)</u> <u>광역시(1.6922)</u>	시·도	$\ln Y_i = (3.37757 + 0.55741 \ln C_a) \times \omega$	<u>특별시(0.7918)</u> <u>광역시(1.6922)</u>	
	특별자치시	$\ln Y_i = (3.37757 + 0.55741 \ln C_a) \times \omega + 0.01668 A$	<u>특별자치시(0.3779)</u>	특별자치시	$\ln Y_i = (3.37757 + 0.55741 \ln C_a) \times \omega + 0.01668 A$	<u>특별자치시(0.3779)</u>	
	시·군·구	$\ln Y_i = (-7.516 + 0.64021 \ln C_a + 0.73406 \ln A) \times \omega$	<u>도(0.5489)</u> <u>시(1.5721)</u> <u>군(0.8896)</u> <u>구(0.6921)</u>	시·군·구	$\ln Y_i = (-7.516 + 0.64021 \ln C_a + 0.73406 \ln A) \times \omega$	<u>도(0.5489)</u> <u>시(1.5721)</u> <u>군(0.8896)</u> <u>구(0.6921)</u>	
	※ C _a : 자동차 대수, A: 행정구역 면적			※ C _a : 자동차 대수, A: 행정구역 면적			
16. 지역관리비	특별시·광역시	$\ln Y_i = (2.04965 + 0.33555 \ln A + 0.32544 \ln P) \times \omega$	<u>특별시(6.5958)</u> <u>광역시(1.4405)</u>	특별시·광역시	$\ln Y_i = (2.04965 + 0.33555 \ln A + 0.32544 \ln P) \times \omega$	<u>특별시(6.5958)</u> <u>광역시(1.4405)</u>	
	특별자치시	$\ln Y_i = (2.04965 + 0.33555 \ln A + 0.32544 \ln P) \times \omega + 0.01987 R_i$	<u>특별자치시(0.9657)</u>	특별자치시	$\ln Y_i = (2.04965 + 0.33555 \ln A + 0.32544 \ln P) \times \omega + 0.01987 R_i$	<u>특별자치시(0.9657)</u>	
	도	$Y_i = (-537.95346 + 0.00435 A + 0.01187 P) \times \omega$	<u>도(0.7578)</u> <u>시(1.1713)</u> <u>군(0.8746)</u> <u>구(0.7153)</u>	도	$Y_i = (-537.95346 + 0.00435 A + 0.01187 P) \times \omega$	<u>도(0.7578)</u> <u>시(1.1713)</u> <u>군(0.8746)</u> <u>구(0.7153)</u>	
	시·군·구	$Y_i = (-1381.3876 + 0.02469 A + 0.05763 P + 0.03738 R_i) \times \omega$		시·군·구	$Y_i = (-1381.3876 + 0.02469 A + 0.05763 P + 0.03738 R_i) \times \omega$		
	※ A: 행정구역 면적, P: 인구 수, R _i : 하천 길이			※ A: 행정구역 면적, P: 인구 수, R _i : 하천 길이			
비고 (생략)				비고 (생략)			

[별표 4] - 전문개정 <개정 전>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제5조제2항제4호 관련)

1.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

측정항목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
1. 일반 행정비	가. 인건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수요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환인원 × 전전년도 1인당 정규직 전환비용(전국공통비용)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나. 일반관리비	낙후지역 수요(시·군·구) [(섬·낙후지역 인구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70%] + [(섬·낙후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30%]
	다. 안전관리비	① 안전관리 수요(시·군·구) 보정인구2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1인당 안전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 수요액에 반영한다. ② 재난안전투자 수요 총예산 대비 안전·보건예산*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공공질서 및 안전과 보건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③ 취약계층 보호구역 수요(시·군·구) 취약계층 보호구역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취약계층보호구역 1구역당 안전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5% ※ 취약계층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말한다. ※ 수요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 반영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2. 문화 관광비	가. 문화 관광비	① 문화재보호구역 수요(시·군·구) 문화재보호구역 면적 × 1천㎡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② 시·도지정문화재 수요(시·군·구) 시·도지정문화재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재통계 1개당 문화재부문 일반재원 × 50%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나. 환경 보호비	① 해안지역 수요(시·군·구) $Y_i = 63.39346 + 0.00267C_o$ Co: 해안선 길이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② 댐지역 수요(시·군·구) $Y_i = 85.56459 + 0.04986D_a + -0.00115D_c$ Da: 댐 면적, Dc: 댐 연결지역(읍·면·동) 인구 수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③ 마을상수도지역 수요(시·군·구) 마을상수도지역 급수 인원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다만, 광역시에 속한 군의 수요는 광역시에 반영한다.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④ 유동인구 수요(시·군·구) 유동인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20% * 유동인구 = 유입인구 - 유출인구 *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많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⑤ 환경보호 관련 규제지역 수요(시·군·구) 환경보호 관련 규제지역 면적 × 1천㎡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 규제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수변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한다.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⑥ 보정인구 수요(시·군·구)

보정인구1 및 보정인구3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보정인구1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의, 보정인구3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각각 반영한다.

⑦ 산업단지 수요(시·군·구)

산업단지·기업도시(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1천㎡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50%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⑧ 자연공원 수요(시·군·구)

자연공원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1천㎡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⑨ 폐기물 관련 수요(시·군·구)

[폐기물 처리량(매립 + 소각 + 재활용)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처리량 1톤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 (수질 정화량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처리량 1㎡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5%)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⑩ 미세먼지 관련 수요(시·군·구)

[(해당 지방자치단체 A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A)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2%] + [(해당 지방자치단체 B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B)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2%] + [(해당 지방자치단체 C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C)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1%] + [(해당 지방자치단체 D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D)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1%]

※ A = 해당 지방자치단체 신재생에너지 생산총량

※ B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대기 및 환경보호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의 일반재원 총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결산총액

		※ C =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기오염 일수* * 대기오염 일수는 PM2.5가 $36\mu\text{g}/\text{m}^3$ 이상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최근 3년 평균값을 반영한다. ※ D = 원격궤폭자동감시장치(TMS) 등으로 측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미세먼지 전체 배출량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2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3. 지역 경제비	가. 농업비	① 방조제, 배수갑문 수요(시·군·구) $Y_i = 7.91629 + 0.00554S_w + 5.10827S_d$ S_w: 방조제 길이, S_d: 배수갑문 수 ※ 2021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② 농업 관련 수요(시·군·구) 농업종사자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농업인구 1인당 농업·농촌 부문 일반재원 × 50%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1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③ 축산·가금류 관련 수요(시·군·구) $[\text{축산 마릿수}(\text{소}+\text{돼지}\times\frac{1}{3}) + \text{가금류 마릿수}(\text{닭}\cdot\text{오리}\times\frac{1}{80})] \times \text{동종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소) 마릿수 1마리당 축산예산*}$ $\text{일반재원} \times 50\% + [\text{도축 축산 마릿수}(\text{소}+\text{돼지}\times A) + \text{도축 가금류 마릿수}(\text{닭}\times B + \text{오리}\times C)] \times \text{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도축 축산 마릿수 1마리당 축산예산* 일반재원} \times 15\%$ *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축산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A, B, C =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종별 소 대비 중량비중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1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나. 임수산비	① 방파제, 물양장(物揚場) 길이 수요(시·군·구) $Y_i = 39.48092 + 0.25127B_w + 0.07693L_w$ Bw: 방파제 길이, Lw: 물양장 길이 ※ 2021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② 수산 관련 수요(시·군·구) 어업종사자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어업인구 1인당 해양수산·어촌 예산* 일반재원 × 50% *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어촌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1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다. 산업 경제비	① 고용감소지역 수요(시·군·구)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 수(아동 및 노령인구 제외)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아동 및 노령인구 제외) 1인당 일반재원 * × 120% * 고용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노동, 산업·중소기업, 산업단지, 평생·직업교육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예산의 일반재원을 적용한다. ※ 자치구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 2022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② 일자리 수요(시·군·구) 해당지방자치단체 실업률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 5% ※ 실업률 = 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수(취업자+실업자) ※ 수요산정액의 50%는 시·도, 5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라. 도로 관리비	① 농어촌도로 수요(시·군) 전전년도 농어촌도로(포장+비포장)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도로면적 1천㎡당 도로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 2021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② 자전거도로 수요(시·군·구) $Y_i = 36.13877 + 0.02411Br$ Br: 자전거전용도로 연장 ※ 2021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③ 유동인구 수요(시·군·구) 유동인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도로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20% * 유동인구 = 유입인구 - 유출인구 *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많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④ 보정인구 수요(시·군·구) 보정인구1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도로관리비 표준행정 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마. 교통 관리비	① 낙후지역 대중교통 지원 수요(시·군·구) $[(\text{섬·낙후지역 인구 수} \times \text{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교통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times 25\%] + [(\text{섬·낙후지역 면적} \times \text{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교통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times 25\%]$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2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② 버스운수사업 재정지원 수요(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버스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정액 × 내국세 증감률 ※ 2022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바. 지역 관리비	① 지역개발 규제지역 수요(시·군·구) 개발제한구역 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 1천㎡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 개발제한구역 수요 산정액은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모두 반영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2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② 폐광지역 수요(시·군·구)

폐광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40%

※ 수요 산정액의 10%는 시·도, 9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성장촉진지역으로도 지정된 경우에는 두 수요 중 유리한 수요를 하나만 적용한다.

※ 2022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③ 접경지역 수요(시·군·구)

접경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40%

※ 수요 산정액의 10%는 시·도, 9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접경지역 중 직전년도의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을 말한다)가 0.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정액의 50%만 반영한다.

※ 2022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④ 보정인구 수요(시·군·구)

보정인구1 및 보정인구3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보정인구1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의, 보정인구3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각각 반영한다.

⑤ 낙후지역 수요(시·군·구)

섬(「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낙후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지역 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2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⑥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 수요(시·군·구)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특구지역 개소 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특구지역 개소 수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2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⑦ 도심지 내 공장 밀집지역 수요(시·군·구)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지역 내 개별 입지 공장 밀집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2022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⑧ 도시공원 수요(시·군·구)

도시공원관리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50%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 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2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⑨ 성장촉진지역 수요(시·군·구)

[(성장촉진지역(「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인구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70% + (성장촉진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30%] × 40%

※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군 중 직전년도의 재정력지수가 0.2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성장촉진지역에 포함시켜 산정하되, 산정액의 50%만 반영한다.

※ 수요 산정액의 10%는 시·도, 9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2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⑩ 유동인구 수요(시·군·구)

유동인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20%

* 유동인구 = 유입인구 - 유출인구

*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많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⑪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수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전전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자체재원 결산액 총액 × 30%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비고

1. 보정인구1: 군인 수(미군 및 미군속과 그 가족을 포함한다) + 의무경찰 수 + 의무소방대원 수 + 재소자 수
2. 보정인구2: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수 + 특별사법경찰 수
3. 보정인구3: 등록외국인 수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 수
4. 행정구역 전체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청·군청 소재지가 섬에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낙후지역 수요 산정액의 500% 범위에서 추가로 보정할 수 있다[연륙도서(連陸島嶼)는 제외한다].
5. 낙후지역은 인구밀도 및 주민 1인당 지방소득세 지표가 모두 전국 면(面) 평균 이하인 읍·면(邑·面) 지역(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고용감소지역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고용위기지역),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
7. 문화재보호구역, 환경보호 관련 규제지역,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은 제외)의 합산 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1천㎡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의 20% 산정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가중하여 산정한다.
 - 가. 행정구역 면적의 50% 이상 60% 미만인 경우: 10%
 - 나. 행정구역 면적의 60% 이상 70% 미만인 경우: 20%
 - 다. 행정구역 면적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30%
 - 라. 행정구역 면적의 80% 이상 90% 미만인 경우: 40%
 - 마. 행정구역 면적의 90% 이상인 경우: 50%

2.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측 정 항 목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사회 복지비	가. 기초생활 보장비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 수요(시·군·구) $\text{동종 지방자치단체별 기초생활보장비 표준행정수요액} \times 30\% \times \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 A}{\text{동종 기초단체 } \Sigma A}$ ※ 수요 산정액의 50%는 시·도, 5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제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나. 기초주택 보장비	○ 국민기초주택수급권자 비율 수요(시·군·구) $\text{동종 지방자치단체별 기초주택보장비 표준행정수요액} \times 30\% \times \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 A}{\text{동종 기초단체 } \Sigma A}$ ※ 수요 산정액의 50%는 시·도, 5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제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나. 노인 복지비	① 노령인구 비율 수요(시·군·구) $\text{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노인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times 30\% \times \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 A}{\text{동종 기초단체 } \Sigma A}$ ※ 고령단체 4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80%, 고령단체 3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20%, 고령단체 2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90%, 고령단체 1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60% 추가 반영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② 노인요양시설 운영 수요(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Y_i = 4016.10843 + 1.27519R_a$ 도: $Y_i = 7579.87884 + 2.62483R_a$ R_a: 노인요양급여지급 대상자
다. 아동 복지비	① 아동인구 비율 수요(시·군·구) $\text{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아동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times 30\% \times \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 A}{\text{동종 기초단체 } \Sigma A}$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② 가정위탁보호아동 수요(시·군·구) 가정위탁보호아동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아동 1인당 아동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③ 출산장려 수요(시·군·구) 0세 아동 수 × 지방자치단체별 아동 1인당 아동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합계출산율 4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200%, 합계출산율 3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50%, 합계출산율 2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00%, 합계출산율 1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50% 반영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2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라. 장애인 복지비	○ 장애인 비율 수요(시·군·구)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30% × $\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 A}{\text{동종 기초단체 } \Sigma A}$ ※ 수요 산정액의 50%는 시·도, 5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마. 보건사회 복지비	① 다문화 수요(시·군·구) (등록외국인 수 + 국적취득자 수 + 국제결혼가정자녀 수 + 북한이탈주민 수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보건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50%는 시·도, 5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②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요(시·군·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원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보건 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기초생활보장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50%는 시·도, 5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비고

$$1. A = \left(1 - \frac{\text{maxX} - Y}{\text{maxX} - \text{minX}}\right) \times \text{통계량}$$

[maxX: 해당 지표에 대한 최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minX: 해당 지표에 대한 최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Y: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 최저 지방자치단체의 Y값은 10%를 가중하되, 차하위 단체의 Y값 이하로 한다.

※ 통계량은 측정항목 중 기초생활보장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수, 노인복지비의 노령인구 비율 수요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노령인구 수, 아동복지비의 아동인구 비율 수요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인구 수, 장애인복지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수를 각각 의미한다.

2. 고령단체의 유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인구수의 25% 이상인 경우: 고령단체 4유형

나.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인구수의 20% 이상, 25% 미만인 경우: 고령단체 3유형

다.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인구수의 14% 이상, 20% 미만인 경우: 고령단체 2유형

라.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인구수의 7% 이상, 14% 미만인 경우: 고령단체 1유형

3. 합계출산율의 유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합계출산율이 1.52명 이상인 경우: 합계출산율 4유형

나. 합계출산율이 1.32명 이상 1.52명 미만인 경우: 합계출산율 3유형

다. 합계출산율이 1.12명 이상 1.32명 미만인 경우: 합계출산율 2유형

라. 합계출산율이 0.92명 이상 1.12명 미만인 경우: 합계출산율 1유형

[별표 4] - 전문개정 <개정 후>

지역균형수요 등 보정 수요 산정방식(제5조제2항제4호 관련)

유형별 측정항목		산정방식
1. 지역관리		
1-1. 보정인구 1 (시·군·구)	• 보정인구 1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표준행정수요액(A + B + C)* * A : 환경보호비, B : 도로관리비, C : 지역관리비 ※ 보정인구1 : 군인수(미군 및 미군속과 그 가족을 포함한다) + 의무경찰 수 + 의무소방대원 수 + 수용자수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1-2. 보정인구 2 (시·군·구)	• 보정인구 2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인력 1인당 안전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 보정인구2(안전관리인력) :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수 + 특별사법경찰 수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1-3. 보정인구 3 (시·군·구)	• 보정인구 3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표준행정수요액(A + B)* × 105% * A : 환경보호비, B : 지역관리비 ※ 보정인구3 : 등록외국인 수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 수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1-4. 유동인구 (시·군·구)	• 유동인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표준행정수요액(A + B + C)* × 20% * A : 환경보호비, B : 도로관리비, C : 지역관리비 ※ 유동인구 = 유입인구 - 유출인구 (단,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많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1-5. 시·도지정문화재 (시·군·구)	• 시·도지정문화재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재 1개당 문화재 예산* 일반재원 × 50% *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문화재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1-6. 하천 (시·군·구)	• 하천 길이(지방하천 + 소하천)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1-7. 폐기물 (시·군·구)	• [폐기물 처리량(매립 + 소각 + 재활용)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처리량 1톤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 (수질 정화량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처리량 1㎥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5%)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1-8. 공원 (시·군·구)	① 자연공원 • 자연공원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② 도시공원 • 도시공원 관리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50%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1-9. 산업지역 (시·군·구)	① 산업단지·기업도시 • 산업단지·기업도시(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50%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지역 내 개별 입지 공장 밀집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2. 지역균형	
2-1. 농업종사자 (시·군·구)	• 농업종사자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농업인구 1인당 농촌예산* 일반재원 × 50% *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농업·농촌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2-2. 어업종사자 (시·군·구)	- 어업종사자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어업인구 1인당 어촌예산* 일반재원 × 50% *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해양수산·어촌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2-3. 방조제, 배수갑문 (시·군·구)	$Y_i = 7.91629 + 0.00554 S_w + 5.10827 S_d$ ※ S_w : 방조제 길이, S_d : 배수갑문 수
2-4. 방파제, 물양장 (시·군·구)	$Y_i = 39.48092 + 0.25127 B_w + 0.07693 L_w$ ※ B_w: 방파제 길이, L_w: 물양장 길이
2-5. 농어촌도로 (시·군)	전전년도 농어촌도로(포장+비포장)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도로 면적 1천㎡당 도로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2-6. 해안지역 (시·군·구)	$Y_i = 63.39346 + 0.00267 C_o$ ※ C_o : 해안선 길이
2-7. 댐지역 (시·군·구)	$Y_i = 85.56459 + 0.04986 D_a + -0.00115 D_c$ ※ D_a : 댐 면적, D_c : 댐 연접지역(읍·면·동) 인구 수
2-8. 축산 (시·군·구)	$\left[\text{축산 마릿수}(\text{소+돼지} \times \frac{1}{3}) + \text{가금류 마릿수}(\text{닭} \cdot \text{오리} \times \frac{1}{80}) \right] \times \text{동종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소) 마릿수 1마리당 축산예산}$ * 일반재원 × 50% *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축산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2-9. 도축 (시·군·구)	$[\text{도축 축산 마릿수}(\text{소+돼지} \times A) + \text{도축 가금류 마릿수}(\text{닭} \times B + \text{오리} \times C)] \times \text{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도축 축산 마릿수 1마리당 축산예산} * \text{일반재원} \times 15\%$ *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축산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A, B, C =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종별 소 대비 중량 비중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2-10. 마을상수도 (시·군·구)	• 마을상수도지역 급수 인원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광역시에 속한 ‘군’의 수요는 광역시에 반영한다.
	2-11. 낙후지역 등 (시·군·구)	① 일반관리 지원 • {[(섬(「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낙후지역 인구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70%] + [(섬·낙후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30%]} × 105% ② 지역관리 지원 • (섬·낙후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105%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③ 대중교통 지원 • {[(낙후지역 인구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교통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25%] + [(낙후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교통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25%]} × 105%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④ 접경지역 • 접경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40% ※ 접경지역 중 직전년도의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을 말한다)가 0.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정액의 50%만 반영한다. ※ 수요 산정액의 10%는 시·도, 9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⑤ 성장촉진지역 • [(성장촉진지역(「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인구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70% + (성장촉진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30%] × 40% ※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군 중 직전년도의 재정력지수가 0.2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성장촉진지역에 포함시켜 산정하되, 산정액의 50%만 반영한다. ※ 수요 산정액의 10%는 시·도, 9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⑥ 폐광지역 • 폐광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40% ※ 수요 산정액의 10%는 시·도, 9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성장촉진지역으로도 지정된 경우에는 두 수요 중 유리한 수요를 하나만 적용한다.
	2-12. 인구감소지역 (시·군)	• $(\text{인구감소지수}/100)^2 \times [(\text{지방자치단체 면적} \times \text{시·군 행정구역 면적 } 1\text{천}\text{㎡당 평균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times 30\%$
	2-13. 보호 및 규제구역 (시·군·구)	①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면적 × 1천㎡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② 환경보호 규제지역 • 환경보호 규제지역* 면적 × 1천㎡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 환경보호 규제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한다. ③ 지역개발 규제지역 • 개발제한구역 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 1천㎡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 개발제한구역 수요 산정액은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모두 반영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3. 사회복지

3-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비율
(시·군·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기초생활보장비 표준행정수요액 $\times 30\% \times \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 A^*}{\text{동종 지방자치단체 } \Sigma A}$
- * $A = (1 - \frac{\text{maxX} - Y}{\text{maxX} - \text{minX}}) \times \text{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수}$
- ※ maxX : 해당 지표에 대한 최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minX : 해당 지표에 대한 최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Y: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최저 지방자치단체의 Y값은 10%를 가중하되, 차하위 단체의 Y값 이하로 한다)
- ※ 수요 산정액의 50%는 시·도, 5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3-2. 노령인구 비율
(시·군·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노인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times 30\% \times \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 A^*}{\text{동종 지방자치단체 } \Sigma A}$
- * $A = (1 - \frac{\text{maxX} - Y}{\text{maxX} - \text{minX}}) \times \text{노령인구 수}$
- ※ maxX : 해당 지표에 대한 최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minX : 해당 지표에 대한 최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Y: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최저 지방자치단체의 Y값은 10%를 가중하되, 차하위 단체의 Y값 이하로 한다)
- ※ 고령단체 4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80%, 고령단체 3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20%, 고령단체 2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90%, 고령단체 1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60% 추가 반영한다.
-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3-3. 노인요양시설
(시·도)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 $Y_i = 4016.10843 + 1.27519 R_a$
- 도 : $Y_i = 7579.87884 + 2.62483 R_a$
- ※ R_a : 노인요양급여 지급대상자

3-4. 아동인구 비율 (시·군·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아동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times 30\% \times \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 A^*}{\text{동종 지방자치단체 } \Sigma A}$ * $A = (1 - \frac{\text{maxX} - Y}{\text{maxX} - \text{minX}}) \times \text{아동인구 수}$ ※ maxX : 해당 지표에 대한 최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minX : 해당 지표에 대한 최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Y: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최저 지방자치단체의 Y값은 10%를 가중하되, 차하위 단체의 Y값 이하로 한다)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3-5. 출산장려 (시·군·구) (‘22년 산정분 까지)	• 0세 아동 수 $\times$ 지방자치단체별 아동 1인당 아동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합계출산율 4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200%, 합계출산율 3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50%, 합계출산율 2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100%, 합계출산율 1유형은 수요 산정액의 50% 반영한다.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3-6. 가정위탁보호아동 (시·군·구)	• 가정위탁보호아동 수 $\times$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아동 1인당 아동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3-7. 장애인 비율 (시·군·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times 30\% \times \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 A^*}{\text{동종 지방자치단체 } \Sigma A}$ * $A = (1 - \frac{\text{maxX} - Y}{\text{maxX} - \text{minX}}) \times \text{장애인 수}$ ※ maxX : 해당 지표에 대한 최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minX : 해당 지표에 대한 최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 Y: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율값(최저 지방자치단체의 Y값은 10%를 가중하되, 차하위 단체의 Y값 이하로 한다) ※ 수요 산정액의 50%는 시·도, 5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3-8. 다문화 (시·군·구)	• (등록외국인 수 + 국적취득자 수 + 국제결혼가정자녀 수 + 북한이탈주민 수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보건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50%는 시·도, 5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3-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시·군·구)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원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표준행정수요액(A + B)* * A : 보건사회복지비, B : 기초생활보장비 ※ 수요 산정액의 50%는 시·도, 5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4. 시책수요 등 기타		
	4-1. 정규직 전환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환인원 × 전전년도 1인당 정규직 전환비용(전국공통비용) ※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4-2. 취약계층보호구역 (시·군·구)	• 취약계층 보호구역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취약계층 보호구역 1구역당 안전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5% ※ ‘취약계층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말한다. ※ 수요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4-3. 고용감소지역 (시·군·구)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 수(아동 및 노령인구 제외)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아동 및 노령인구 제외) 1인당 일반채원* × 120% * 고용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노동, 산업·중소기업, 산업단지, 평생·직업교육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되, 2023년도분의 가중치는 120%를 50%로 변경 적용한다.(2023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연장 ‘18.~23.5월까지)

4-4. 지역특화발전특구 (시·군·구)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 수요액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특구지역 개소 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특구지역 개소 수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2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4-5. 일자리 (시·군·구)	• (해당지자체 실업률 × 동종자치단체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동종별평균액) × 3% + [(조정계수* × 해당지자체 고용률) × 동종자치단체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동종별평균액] × 3% * 조정계수 = $\frac{\text{동종지자체 평균실업률}}{\text{동종지자체 평균고용률}}$ ※ 2024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4-6. 재난안전투자 (시·도, 시·군·구)	• 총예산 대비 안전·보건 예산*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비 표준행정 수요액 × 10% *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4-7. 버스재정지원 (시·도)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버스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정액 × 내국세 증감률 ※ 2022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4-8. 자치단체 간 협력	•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전전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자체재원 결산액 총액 × 30%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4-9. 미세먼지 (시·군·구)	• [(해당 지방자치단체 A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A)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2%] + [(해당 지방자치단체 B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B)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1%] + [(해당 지방자치단체 C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C)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1%] ※ A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대기 및 환경보호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의 일반재원 총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기 및 환경보호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의 결산총액 ※ B =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기오염 일수* * 대기오염 일수는 PM2.5가 36$\mu\text{g}/\text{m}^3$ 이상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최근 3년 평균값을 반영한다. ※ C = 원격궤돌자동감시장치(TMS) 등으로 측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미세먼지 전체 배출량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2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4-10. 지역균형뉴딜 (시·군·구)	• [(해당 지방자치단체 A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A)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친환경 자동차 1대당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 4%] + [(해당 지방자치단체 B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B) × 동종 지방자치단체 신재생에너지 1toe당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 3%] * A :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등록 대수, B : 신재생에너지 생산 총량 ※ 2024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4-11. 재해복구 대응 (시·군·구)	• 전전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지역) 지원복구비의 지방비 중 지방자치단체별 자체채원 부담액 × 20% ※ 2024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4-12.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지원	• (「지방자치법」 제206조 제1항에 따라 특별지자체 운영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한 금액(자체채원)의 결산액) × 10% ※ 2024년 결산분까지만 적용한다.

※ 비고

1. 낙후지역은 인구밀도 및 주민 1인당 지방소득세 지표가 모두 전국 면(面) 평균 이하인 읍·면(邑·面) 지역(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행정구역 전체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청·군청 소재지가 섬에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낙후지역 수요 산정액의 500% 범위에서 추가로 보정할 수 있다[연륙도서(連陸島嶼)는 제외한다].

3. 고령단체의 유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인구수의 25% 이상인 경우: 고령단체 4유형

나.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인구수의 20% 이상, 25% 미만인 경우: 고령단체 3유형

다.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인구수의 14% 이상, 20% 미만인 경우: 고령단체 2유형

라.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인구수의 7% 이상, 14% 미만인 경우: 고령단체 1유형

4. 합계출산율의 유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합계출산율이 1.52명 이상인 경우: 합계출산율 4유형

나. 합계출산율이 1.32명 이상 1.52명 미만인 경우: 합계출산율 3유형

다. 합계출산율이 1.12명 이상 1.32명 미만인 경우: 합계출산율 2유형

라. 합계출산율이 0.92명 이상 1.12명 미만인 경우: 합계출산율 1유형

5. 문화재보호구역, 환경보호 관련 규제지역,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은 제외)의 합산 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1천㎡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의 20% 산정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가중하여 산정한다.

가. 행정구역 면적의 50% 이상 60% 미만인 경우: 10%

나. 행정구역 면적의 60% 이상 70% 미만인 경우: 20%

다. 행정구역 면적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30%

라. 행정구역 면적의 80% 이상 90% 미만인 경우: 40%

마. 행정구역 면적의 90% 이상인 경우: 50%

6. “고용감소지역”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고용위기지역’),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

[별표 6]

현행		개정안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8조 관련)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8조 관련)
1. 세출 효율화		1. 세출 효율화
반영항목	산정방식	
1. 인건비 건전 운영	(생략)	(현행과 같음)
2. 지방의회 경비 절감	(생략)	(현행과 같음)
3. 업무추진비 절감	(생략)	(현행과 같음)
4.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생략)	(현행과 같음)
5. 지방보조금 절감	(생략)	(현행과 같음)
(삭제) 6. 민간위탁금 절감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액 대비 민간위탁금 결산액 비율 상위 1/3 단체 비율 평균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액 대비 민간위탁금 결산액 비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금 결산액의 20% ※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삭제)
7. 예산집행 노력	① (동종 지방자치단체 중위 불용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불용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불용액 총액 * 불용률 = 불용액 총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최종 예산현액 ※ 불용액은 집행잔액 총액(집행사유 미발생, 세출절감, 낙찰차액, 일반	① (동종 지방자치단체 중위 불용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불용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불용액 총액 * 불용률 = 불용액 총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최종 예산현액 ※ 불용액은 집행잔액 총액(집행사유 미발생, 세출절감, 낙찰차액, 일반

	· 재난예비비 등)을 말한다. 다만, 초과세입 및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불용액은 제외한다. ※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② (동종 지방자치단체 중위 이월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월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현액 × 5% * 이월률 = 이월액 총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최종 예산현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재해 복구예산으로서 하반기에 교부되는 예산 중 이월되는 예산, <u>국고보조사업 중</u> 이월되는 예산은 각각 예산현액 및 이월액에서 제외한다. ※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①, ②는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 재난예비비 등)을 말한다. 다만, 초과세입 및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불용액은 제외한다. ※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② (동종 지방자치단체 중위 이월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월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현액 × 5% * 이월률 = 이월액 총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최종 예산현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재해 복구예산으로서 하반기에 교부되는 예산 중 이월되는 예산, <u>국가로부터 교부되어</u> 이월되는 예산은 각각 예산현액 및 이월액에서 제외한다. ※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①, ②는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비고(생략)		비고(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세입 확충		2. 세입 확충
반영항목	산정방식	
1. 지방세 징수율 제고	①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 180% ②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중위 단체 평균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 ①, ② 산정 시 지난 연도분 부과·징수 실적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지방소비세 부과·징수 실적을 제외한다.	①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 180% ②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중위 단체 평균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 ①, ② 산정 시 지난 연도분 부과·징수 실적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지방소비세 부과·징수 실적 및 밀반입 담배에

	※ "①+②"의 결과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u>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부과·징수 실적을 제외한다.</u> ※ "①+②"의 결과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2. 지방세 채납액 축소	①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채납 누계액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채납 누계액) × 180% ※ <u>지방세 징수액 차감 시 전전년도 결손처분분을 제외하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미징수액 및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인 지방세 채납액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송이 종료된 경우 소송이 종료된 연도의 결산이 끝난 후에 해당 채납액을 산정에 포함한다.</u> ② (동종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채납징수율 중위 단체 평균 채납징수율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채납징수율)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채납액 징수액 ※ 전전년도로 이월된 지방세 채납액 중 결손처분분을 제외한다. ※ "①+②"의 결과 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①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채납 누계액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채납 누계액) × 180% ※ <u>지방세 징수액 차감 시 전전년도 결손처분분을 제외하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미징수액과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인 지방세 채납액 및 밀반입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미징수액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송이 종료된 경우 소송이 종료된 연도의 결산이 끝난 후에 해당 채납액을 산정에 포함한다.</u> ② (동종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채납징수율 중위 단체 평균 채납징수율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채납징수율)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채납액 징수액 ※ 전전년도로 이월된 지방세 채납액 중 결손처분분을 제외한다. ※ "①+②"의 결과 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3. 경상세외 수입 확충	(생략)	(현행과 같음)
4. 세외수입 채납액 축소	(생략)	(현행과 같음)
5. 적극적 세원 관리	(생략)	(현행과 같음)
6. 지방세 감면액 축소	(생략)	(현행과 같음)